

# 채권법 2

- 계약체결단계에서 상대방의 신체,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(제 535조)으로 다루지 불법행위책임(제750조)으로 다루지 문제가 된다.

- 판례의 태도: 대법원은 '신의칙상 부수의무'로서 계약상대방의 생명, 신체, 건강, 재산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'보호의무'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.

-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달리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부터 하여금 이익을 사용·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

-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을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·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,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·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·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.

- (출처 :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다 38718,38725 판결【손해배상(기)】 [공 2001.1.15.(122),137])

-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·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,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·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.
- (출처 : 대법원 1999.07.09. 선고 99다10004 판결 임대차보증금 [공1999.8.15.(88),1600])

- **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, 신체,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·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,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( 대법원 1999. 2. 23. 선고 97다12082 판결, 2000. 5. 16.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),**

-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**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**라야 할 것이고,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,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(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다 56734 판결 참조).
- (출처 : 대법원 2006.9.28. 선고 2004다44506 판결  
【손해배상(산)등】      [공보불게재])

-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**불법행위**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99다 40418 판결 참조).
- (출처 :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1다53059 판결【손해배상(기)】 [집51(1)민,126;공 2003.6.1.(179),1151])

- 따라서 판례의 입장은 부수의무로서 계약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 보호개념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, 이는 계약상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, 오히려 강학상의 보호의무는 불법행위책임에 가깝다.